

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1. 제정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·의결을 하기 위함.
-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관한 심의사항만 심의·의결하도록 국한되어 있어
-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중요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·의결·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기능(심의·의결 사항) - 안 제3조
-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구성(구성·인원·직무에 관한 사항) - 안 제4조, 제5조
- 의견정취(심의관련 이해관인인, 전문가 의견) - 안 제 7조

3. 검토의견

- 현재 운영중인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
- 현재 운영중인 「목포시기초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: 조례 제2080조」를 폐지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용에 부응해서 사회복지전반에 관한 중요 시행계획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할 수 있는
- 「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」이 제정되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능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
- 사회복지전반에 관한 중요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에 대한 지역협의체로서 심의·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되도록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